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5
----------	-----

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가. 제안이유

-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2019년 12월 29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서울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의 이용료 할인 등 지역주민이 편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재 위탁)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법인을 통한 운영 필요

3) 위탁 사무내용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업무

○ 마포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수선 등 유지관리 업무

4) 시설개요

○ 시설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상암동 17-2)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4층, 별관 1동

○ 연면적 : 4,754m²

○ 주요시설 :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실내골프, 목욕탕 등

○ 준공일자 : 2009. 12.

○ 이용대상 :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5) 위탁기간 : 3년('19.12.30. ~ '22.12.29.)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9.12.30.~'12.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2차 : '12.12.30.~'15.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3차 : '15.12.30.~'18.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4차 : '18.12.30.~'19.12.29. (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7)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수익창출형으로 수익금으로 운영)

8) 기대효과

- 전문법인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25%)받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에 각각 주민편익시설이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에 있음.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생략)

- 마포주민편익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서울시와 마포구가 비용을 분담¹⁾

1)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과 달리 인근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마포구에서 토지매입지 26억원을 분담하였음.

하여 2009년 12월 준공되었고 그해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수의계약) 중에 있으며, 현 4회차 민간위탁 기간('18.12.30~'19.12.29)을 1년으로 한 것은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것임.

2) 민간위탁 타당성

-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실내골프장, 사우나 등의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5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당시 강동, 구리, 광양 등 19개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 그리고 현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10년이 되므로 앞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차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며, 별도 예산 지원없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수익창출형²⁾'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음.

3) 위탁관리 개선방안 마련

2)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사용수익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시설 운영 목적을 고려한 인근 거주자 이용 비중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개선요청사항 >>

- 운영초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주민참여 저조(이용참여 및 주민수요 저조)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며, 생활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이 수행되고 있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수요를 조사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인력운영방안 모색 필요
-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립된 이후에(구의회의 예산계획 수립시점에 따라) 사업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시설사업계획이 정해진 절차, 시기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되고 보수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탁사무 특성을 반영하는 중장기 계획 독립적 수립과 사업활성화 방안 강화 필요
- 영향지역에 따른 이용대상의 제약은 없는 상태이나 마포주민편익시설의 한계수용 인원(1,435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탁시설 운영목적에 고려한 거주인원(상암지역) 이용자 수혜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5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19.12.29.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2009년 부터 위탁 운영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법인을 통한 운영 필요

다. 위탁 사무내용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업무
- 마포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수선 등 유지관리 업무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상암동 17-2)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4층, 별관 1동
- 연면적 : 4,754m²
- 주요시설 :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실내골프, 목욕탕 등
- 준공일자 : 2009. 12.
- 이용대상 :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마. 위탁기간 : 3년('19.12.30. ~ '22.12.29.)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9.12.30.~'12.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2차 : '12.12.30.~'15.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3차 : '15.12.30.~'18.12.29. (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4차 : '18.12.30.~'19.12.29. (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수익창출형으로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법인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